섹슈얼리티와 성소수자

I. 성적지향과 성소수자

田.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인식과정 田. 성적지향 관련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의 한계

학습목표

- 1. 섹슈얼리티 및 성소수자에 관한 기본 개념을 숙지한다.
- 2. 인간이 지닌 성욕과 성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독단적 태도를 극복한다.
-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형태를 학습하고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정체성(identity):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인식
- 성정체성(gender identity):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장 기본 적이고 중요한 것에 속함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정체성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트랜스젠더, 자웅동체
- 섹슈얼리티(sexuality): 인간은 성적 존재로서 성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섹슈얼리티는 무차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방향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성적지향

1. 성적지향

- 성적지향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성적으로 끌리는 개인의 지속적 성향을 의미
- 끌림은 이성/동성/양성 모두에게도 발생 가능, 각기 이성애(hetero sexual)/ 동성애(homosexual)/양성애(bisexual)로 지칭
- 대다수 사회에서 지배적인 성적지향은 이성애이지만, 동성애/양성애의 비율도 적지 않고, 아무와도 성관계를 맺지 않는 무성애(asexual)도 새롭게 발견되고 있음
- 이성애 하나로 성적지향을 단일화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성적지향 관련 성소수자

- 1) 남녀양성중심의 이성애중심체제와 성소수자
- 대다수의 인간사회는 성정체성에 관해서는 '남녀양성중심체제', 성적지향에 관해서는 '이성애중심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 성소수자는 '남녀양성중심', '이성애중심'과 같은 사회의 지배적인 성적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칭
- 성소수자는 주로 LGBT가 거론되는데, 최근에는 LGBTQ, LGBTI 등으로 확대 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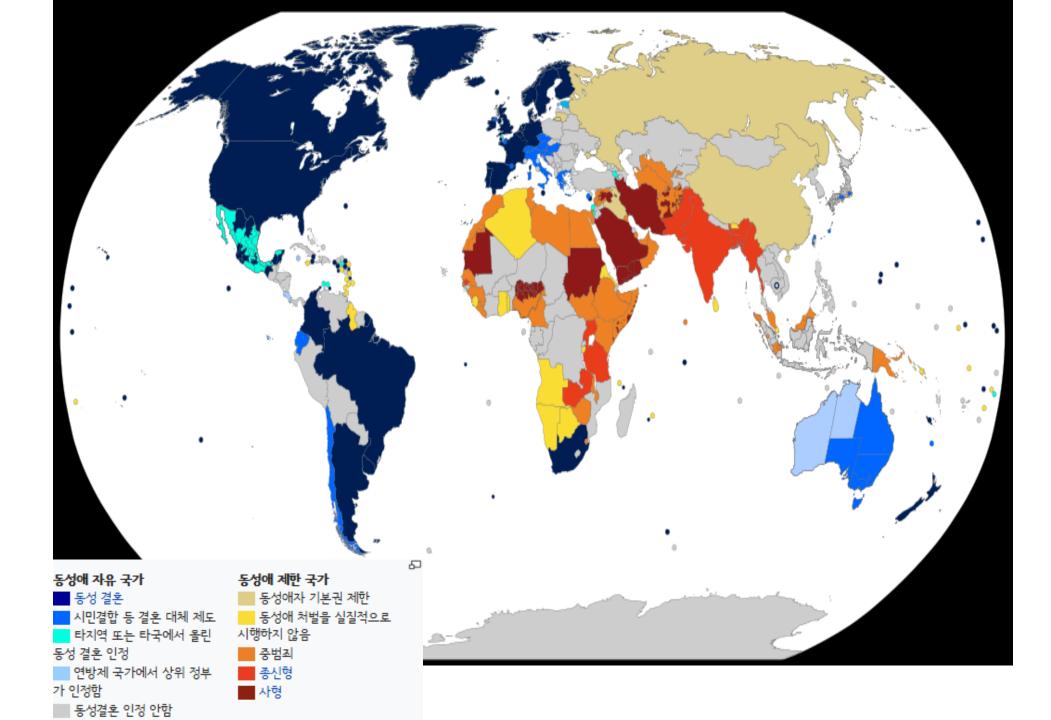
Lesbian/Gay/Bisexual/Transgender/Queer/ Intersex

2) 이성애의 강요와 성적지향 관련 성소수자

- 오랜 기간 이성애가 일방적으로 강조되면서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성소수 자들에 대한 폭력이 구조화
- 특히 근대 성의학이 단순한 차이/다름이 아닌 정상/비정상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관련 성소수자들에 대한 각종 물리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차별과 폭력을 구조화하는 계기를 제공
- 성적지향 관련 성소수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이고 혹독한 멸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고, 아직도 그 존재의 부정이 행해지고 있음
-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흐름이 시작



코리 메이슨(Corey Maison)과 엄마 에리카 메이슨(에릭)



Ⅲ.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인식과정

1.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형성과 탄압

- 자손의 재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성행위의 금지를 강조하면서 시작
- 이후 각종 종교와 도덕적 신념에 휩싸여 더욱 터부시 됨: 기독교와 이슬람 교에서는 죄악으로 규정하여 금지해 왔고, 근대 유럽에서는 범죄 또는 정신병으로 간주하여 처벌과 치료를 통한 교정을 시도
- 이 과정에서 과학과 정의의 이름으로 범죄가 자행: 19세기 서양의학계에서는 치료 명목으로 거세, 뇌수술, 이성애자의 고환 이식과 같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과 범죄들이 자행
-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1895년에 검거되어 2년간 옥고를 치름
-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수학자 '알란 튜링(Alan Turing)'은 전쟁이 끝난 후 동성애 죄로 체포되어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2년 만에 자살

Ⅲ.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인식과정

2. '동성애자' 개념의 형성

- 19세기 이전에도 '동성애' 개념이 존재: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만 인식되는 개념,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
- 근대 이전 동성애는 부도덕한 행위 또는 죄악으로 규정됨: 동성애의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받든지 고백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
- → 부도덕한 행위/죄악으로 규정된 '동성애'라는 개념은 존재, 사회적 범주로서 분류되는 '동성애자'라는 개념은 부재
-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동성애는 19세기 성의학의 발명품
- 19세기 성의학의 발명품으로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동성애' 개념의 형성과 더불어 '동성애자' 개념이 등장 → 근대 성의학에 의해 동성애가 질병으로 간주되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하나의 사회적 범주로 분류되어, 오랜 기간 동안 정상인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규정되며 사회적으로 배제

田.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인식과정

3.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만연과 동성애(자) 억압

-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차별을 뜻하는 말로서 '동성애혐오증/공포증'으로 번역
- 적절한 정보나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하게 동성애는 나쁘고 일종의 질병/전염병/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며 동성애(자)를 대하는 증상
- 내포된 공포의 본질은 동성애(자) 자체에 대한 공포 측면보다는, 그 낙인/오 인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excommunication)에 대한 공포 측면이 높음
- 호모포비아는 이런 사회적 배제 위협을 통해 동성애자는 물론 이성애자의 욕망도 억압하고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공고한 이성애 질서를 지 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지배력을 행사

Ⅲ.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인식과정

4.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변화

- 동성애는 19세기부터 정신질환(성의학)이자 동시에 범죄로 분류
- 1969년 미국의 '스톤월 투쟁(Stonewall Riots)'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조직화가 촉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회적 투쟁과 캠페인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
- 1973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가 최종 제외
- → 영국은 1967년, 미국은 2003년 동성애가 합법화
- 현재는 동성애에 대한 정신병 분류는 잘못이라는 견해가 일반화되었고, 동성 결혼까지 인정/허용하는 추세

田.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인식과정

5. 동성애(자) 적대시 국가들

- 뿌리깊은 이성애 질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자)에 적대적 입장
- 동성애를 불법화한 국가는 82개국에 달하고 러시아, 이란, 우간다 등이 대 표적

○ 러시아

- 2013년 6월 동성애 찬양/고무 동성애 관련 단체결성 금지법이 통과
- 동성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동성애 이름을 건 모든 활동을 불법화

○ 이란/우간다

- 이란/우간다에서는 동성애를 사형선고까지도 가능한 중범죄로 간주
-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 자녀를 신고하지 않은 부모, 동성애자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 동성애자인 학생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 등 모두 처벌의 대상

- 동성애 외에 성적지향 관련 성소수자는 과거 변태성욕자로 지칭되었고, 유형도 다양
- 이 중 소아성애와 연쇄강간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이고 악질 범죄로 인 식 → 향후에도 합법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성격의 성적지향

1. 소아성애

- 아동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성적지향으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격 하게 금지
- 치료를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

2. 연쇄강간

- 강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성적 쾌감에 도달
-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표적을 물색하고 범죄에 나섬

2. 소아성애/연쇄강간의 근본적인 문제점

- 소아성애/연쇄강간은 '성인들 간 합의'라는 성관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이해/포용/인정의 한계를 벗어난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성격의 성적지향

※ 차별금지법

1957년 "성인 사이에 합의한 사적인 동성 간 성행위는 더 이상 범죄행위로 취급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울펜덴 보고서(Wolfenden report)가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 한국의 차별금지(법)

차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 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2. 제1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10명 모아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천신만고 끝에 발의는 했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이르렀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겨레 2020년 6월 29일

생각해 봅시다.

- 1. 성적지향과 성적취향의 차이는 무엇일까?
- 2. 왜 이성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랑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까?
- 3. 성소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사회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에 귀기울이지 않을까?